

2022년도 부산지방우정청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

직급(직종)	시험 구분	선발 예정 인원 (총 72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4과목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계리)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 반: 65명 장 애 인: 6명 저 소 득: 1명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 일반(기초영어 포함)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 모집표

(단위: 명)

구분	모집단위(지역)	선발인원
부산지방우정청(일 반)	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65
부산지방우정청(장애인)		6
부산지방우정청(저소득)		1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우정9급(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 등에서 근무합니다.

※ 계리직종의 직무 내용은 「우체국 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 창구업무·현금 수납」 등 각종 계산 관리업무 및 우편 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

2.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1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컴퓨터 일반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
 - 시험시간: 80분(문항당 1분, 과목별 20분 기준)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외의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 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 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 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외의 일반분야에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 응시자는 공고일('22. 2. 23.) 현재 「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향후 채용시험이 진행될 경우,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접수 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22. 3. 15.(화) ~3. 18.(금) ※ 접수 취소 3. 21.(월) 21:00까지	필기시험	'22. 5. 2.(월)	'22. 5. 14.(토)	'22. 6. 21.(화)
		면접시험	'22. 7. 12.(화)	'22. 7. 23.(토)	'22. 7. 29.(금)

- 시험 일정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 방법·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방법 및 시간

- 접수 방법: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內 「2022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 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 가능
- 접수 시간: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종료일 21:00까지
- 응시수수료: 5,000원
-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비용) 발생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內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원서 접수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환불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저소득층 대상 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별도의 처리비용은 미반환)
- 사진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진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규격) 반명함판 증명사진,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미만, 파일형식 JPG/GF
-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얼굴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

나.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장애유형(시각·지체·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1 안내문을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內,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 기간) '22. 3. 21.(월) 21:00까지
- 원서 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필기(제1차)시험 응시 장소

모집단위(지역)	제1차(필기)시험 응시지역
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일반, 장애인, 저소득)	부산광역시 등

※ 응시 장소는 시험장 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15. 5. 6.)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006)에 확인

다. 의사상자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124-202-3255)에 확인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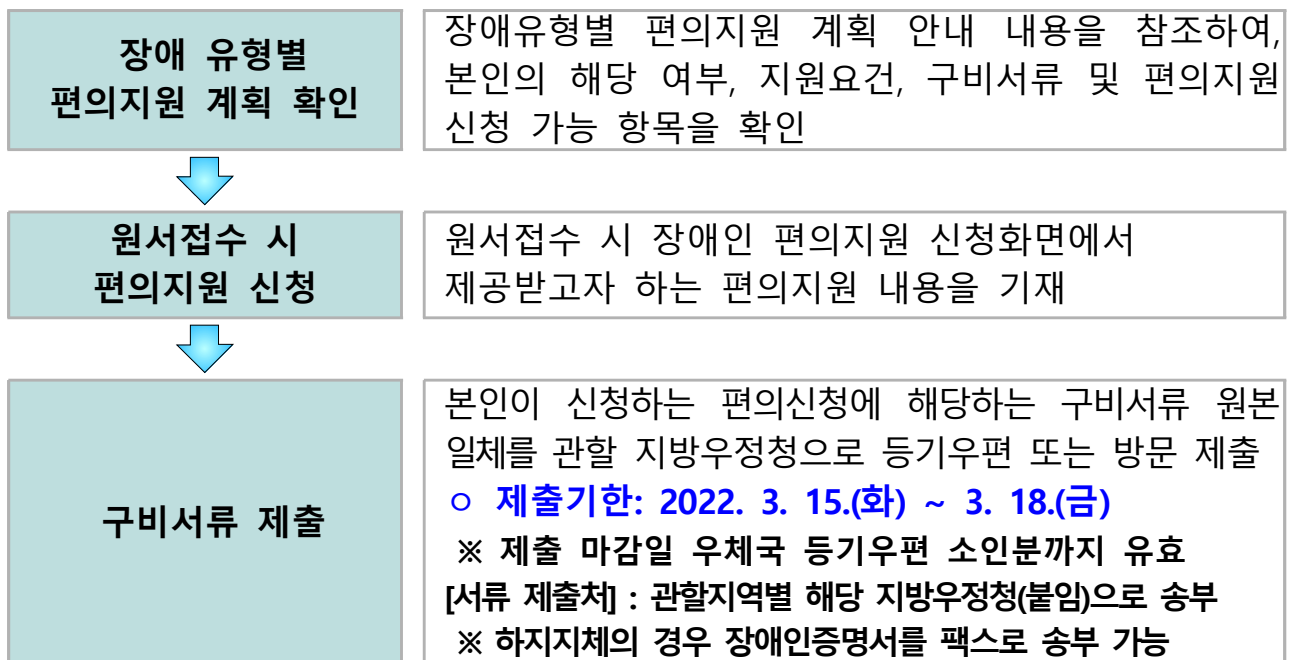
-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 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 또는 통지합니다.
- 바.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비정기 시험으로, 시험 실시가 결정될 경우, 사전 공고를 통해 일정 등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사. 수험생께서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19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051-559-3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신청 대상

- 2022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2. 신청 절차



3. 편의지원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 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2.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0. 3. 19. 이후 발급)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 · 약국 찾기]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야 함)
3. 의사진단서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에 예시된 각 장애유형별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밑줄 참조)을 누락됨 없이 진단서에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른 편의를 제공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붙임의 해당 서류 제출처로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안내 등

■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미만인 자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진단서: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소견서 불인정) ※ 제출기한: 2022. 3. 1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두 눈의 교정시력(좌, 우 각각 명시)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1, 우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 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1.2배): 80분 → 96분

■ 시각장애인 중 기타 시각장애인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제출기한: 2022. 3. 1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舊 1~3급) · 상이등급(1~3급)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진단서: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소견서 불인정) ※ 제출기한: 2022. 3. 18.(금)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 동일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자(구 0급)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 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시험시간 연장(1.2배): 80분 → 96분 ▶ 대필지원 ▶ 휠체어 전용(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舊 4~6급) · 상이등급(4~7급)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제출기한: 2022. 3. 1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舊 1~3급) · 상이등급(1~3급)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진단서: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소견서 불인정) ※ 제출기한: 2022. 3. 18.(금)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자(구 0급)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시험시간 연장(1.2배): 80분 → 96분 ▶ 대필지원 ▶ 휠체어 전용(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舊 4~6급) · 상이등급(4~7급)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제출기한: 2022. 3. 1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 임신부

지원요건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 임신부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제출기한: 2022. 3. 1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임신부·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 의사 소견서 1부 ※ 제출기한: 2022. 3. 18.(금)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ex) 상기인은 임신()주, 필기시험 예정일(2022. ○. ○.)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하지 지체장애인: 별도(저층)시험장(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 임신부·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부산지방우정청 편의지원서류 제출 주소 및 연락처】

지 역	우정청명	주소	전화/팩스
부산·울산·경남	부산지방우정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거제동 1473)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47502	051)559-3236 0505-005-1457